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인

2026년 9월 29일

국 무 총 리 한 성 숙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장관 윤 호 중
(법무부 소관)

◉법률 제22003호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규정된 범죄로 수사”를 “규정된 범죄로 수사(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 한다.

제8조의2제2항 본문 중 “조사”를 “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(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조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조사”를 “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,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「형사소송법」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,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,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.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